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일시 • 2023년 3~4월 화/목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5회차 연속토론회

“구조적 차별은 없다?” ‘차별의 구조’를 밝히며
이에 도전해온 운동의 역사와 함께 각 의제별 쟁점을 살펴보고,
평등을 향한 사회적 연대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나눕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 • 2회차 진행 : 훈창 (인권아카이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

1차	3월 30일(목) 19:30~21:30	"구조적 성차별 없다는데 무슨 여성할당제?" - 평등의 관점으로 적극적 조치 다시보기 • 김경희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2차	4월 6일(목) 19:30~21:30	"빈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벗어나라?" -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상태로 인한 차별을 가시화하기 •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 형진 (홈리스행동)
3차	4월 11일(화) 19:30~21:30	3회차 "이렇게 살 순 없지 않습니까" - 평등하게 일할 권리, 인간답게 싸울 권리 •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몽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4차	4월 18일(화) 19:30~21:30	4회차 "민원에 대응할 뿐, 인종차별은 아니라고?" -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과 한국사회 무슬림 혐오 • 육주원 (경북대 사회학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의 평화적 건축을 위한 대책위원회) • 이진혜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5차	4월 25일(화) 19:30~21:30	5회차 "제도가 만들어지면 땡? 평등은 누가 키워?" - 차별의 구제, 소수자 인권보장과 평등의 실현 •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 이진숙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빈곤과 차별금지법·평등법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차별금지 및 불평등 해소

2023.4.6.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jooyounglee@snu.ac.kr

국가인권위원회 시행 '2022년 인권의식 실태조사'

인권침해와 차별을 많이 받는 계층으로
'경제적 빈곤층'이라는 응답이 38.2%로 가장 높았음.

2022년 7월-9월 국내 거주 만 18세 이상 개인(9,043가구의 가구원 16,148명) 응답

한국갤럽,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조사 (2022.5.3-5.4)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제정해야 한다' 57%, '제정
해선 안 된다'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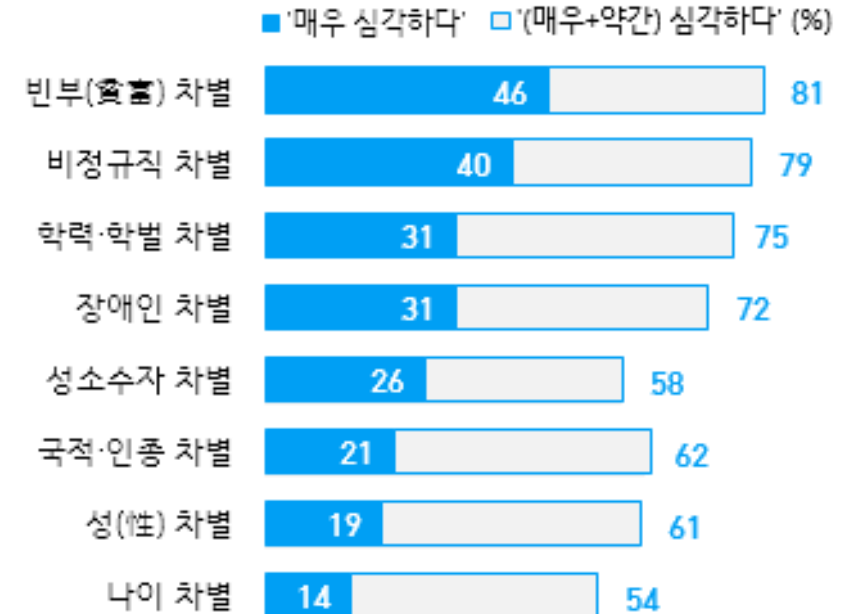
성(性), 나이, 장애인, 빈부(貧富), 성소수자, 학력·학벌,
비정규직, 국적·인종 등 8개 항목 각각에 대해 우리 사회
의 차별 정도에 대한 심각성 인식 (4점 척도 중 '(매우+
약간) 심각하다' 응답)

빈부(貧富) 차별과 비정규직 차별 80% 내외, 학력·학벌
차별과 장애인 차별 70%대, 성소수자 차별, 국적·인종
차별, 성(性) 차별 60% 내외, 나이 차별 54%

출처: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
eqNo=1295](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
eqNo=1295)

● 우리 사회 차별 정도 인식 - 8개 항목별



유엔 극빈과 인권 특별보고관 (Olivier De Schutter) 2022년 보고서

- 파버티즘(povertyism): 가난한 사람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고정관념
- 사회경제적 취약성(socio-economic disadvantage)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해야

- 빈곤층은 어떤 인권 문제를 경험하는가?

- 사회경제적 박탈: 노동, 교육, 주거, 건강, 과학기술 및 문화생활
- 편견, 낙인, 무시
- 사회적 배제

- 인권의 역할

→사회권 보장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및 불평등 해소

사회권

- 근대 자본주의 산업사회
 - 인간의 욕구와 노동력 상품화
 - 대다수, 임금소득 통해 생계 유지. 식량, 주거, 의료, 교육 등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상품 구매를 통해 충족
 - 이른바 '사회적 문제': 빈곤, 실업, 열악한 주거와 위생환경 등의 문제
- 인권으로서 사회권
 - 소득수준, 계층에 관계 없이 보편적 권리로서 사회권 보장
 - 노동, 식량, 주거, 의료, 교육 등 인간다운 삶에 필수적인 조건, 재화, 서비스의 상품화 완화. 인간다운 삶이 시장에서의 구매력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 사회권 보장 수준: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탈상품화 정도, 접근 정도와 긴밀히 연관

Gøsta Esping-Andersen,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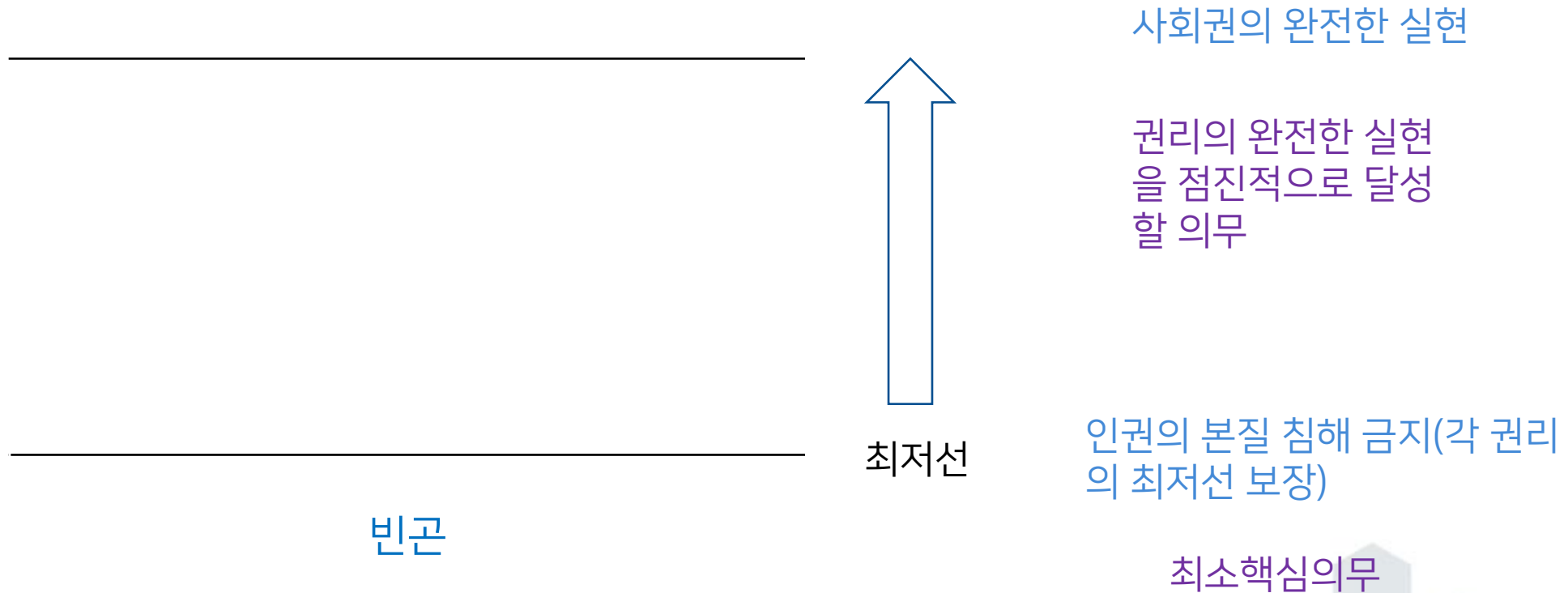
보편적 인권으로서 사회권

- 적절한 생활수준을 가능케 하는 임금, 안전한 노동조건 등 관참은 일자리
- 소득보장, 의료보장, 돌봄 등 사회보장
- 적절한 주거, 식량, 식수 및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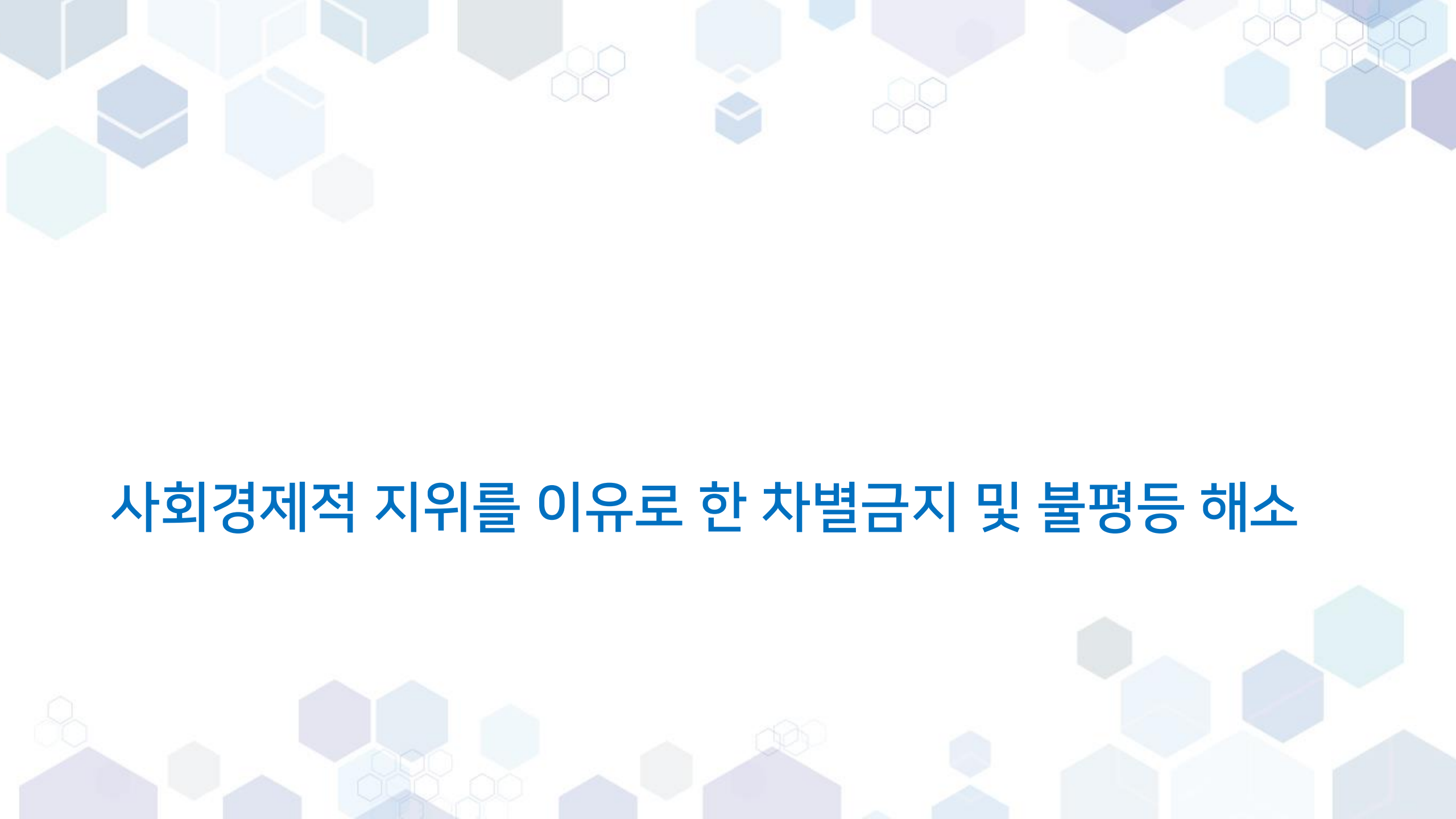
등에 대한 접근

→ 소득 및 부와 관계없는 모두의 권리로 보장

사회권의 보장 수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1항,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호

The background of the slide is decorated with a pattern of hexagons in various shades of blue, teal, and grey. Some hexagons are solid, while others are outlined, creating a modern, geometric aesthetic.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및 불평등 해소

- 법의 평등한 보호

세계인권선언 제7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6조

- 비차별 및 평등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2항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1항

“... 사회적 출신, 재산 ...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20호 비차별 및 평등, 35항

“기타의 신분”이 경제적 및 사회적 상황을 포함한다는 해석:

“개인 및 집단은 사회 내의 특정 경제 또는 사회적 집단 또는 계층에 속한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누군가 가난하게 살거나 홀리스일 때 그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이 만연한 차별, 낙인, 부정적 고정관념을 야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 및 보건, 공공장소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하거나 불평등을 경험할 수 있다.”

동등대우 원칙/직접 차별금지

- 합리적 사유 없이 성별, 인종, 민족, 피부색, 종교, 장애 등을 사유로 한 직접 차별 금지
- 특정 속성에 관한 편견을 기반으로, 교육, 고용, 주거, 재화 및 서비스 제공 등에서의 차별금지

→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추가

- 어떤 의미?
- 어떤 어려움 또는 한계?

실질적 평등 증진

- 불리한 상황 개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빈곤, 수급자 상태, 고용형태, 주거형태 등)에 속하는 사람들이 고용, 교육, 소득, 사회보장, 주택, 자산 등 사회경제적 자원과 기회에 접근하는 데 어떤 장벽이 있는지 불이익 해소 조치 요구
- 사회적 낙인, 고정관념, 괴롭힘 및 폭력 시정: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성소수자 혐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지위에 기반을 둔 고정관념 해소, 동등한 지위, 존엄 인정
- 차이 수용: 사회적으로 구성된 차이이든, 고유한 정체성의 차이이든, 구조 변화 또는 규범의 일정한 예외 통해 동등한 권리 향유 보장
- 참여 보장과 사회적 포용 증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정치적 참여, 사회적 연결망 형성의 기회 증진

Sandra Fredman, "Substantive equality revisited",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Vol.14, Issue 3, July 2016, pp.712-738.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조치

- 국가 차원의 관행

- 어퍼머티브 액션(미국): 채용/승진, 공공계약, 대학 입학 과정에서 소수인종, 여성, 장애인 등 고려하는 정책과 관행
- 포지티브 액션(유럽연합): 실질적 평등 증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 전반.

- 교육이나 고용 영역에서 소수자 비율을 높이는 방식의 어퍼머티브 액션

- 불평등 상황 개선 / 다양성 증진 도모의 방안일 수 있음.
- 그러나 유일한 방안 아님. 능력주의(merit) 기반 노동이나 교육에서 구조화된 위계나 그러한 위계에 따른 부당한 격차 강화할 위험 경계 필요.

실질적 평등 증진을 위한 다차원적 분석틀

- 각기 다른 차원의 평등권 실현 조치들 간의 상호 효과 포괄적 고려
- '특별조치' 또는 '적극적 조치'의 설계 및 실행
 - 차별 및 불평등의 구체적 현황에 근거
 - 빈곤층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잠재적·실질적 영향 평가
 -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 사전 협의, 적극적 참여 촉진, 보장
 - 사회적 낙인이나 편견 강화하지 않도록

외국의 헌법 또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사례

-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
 - 사회적 기원 (social origin): 국제인권조약의 용어 차용
 - 사회적 지위 또는 사회적 계급(social status, social position, social condition or social class)
 - 부, 소득, 재산, 경제적 상황, 재정적 지위(wealth, income, property, economic situation, financial status)
 - 교육(education)
- 법원 또는 차별시정(평등)기관의 역할
 - 개인의 권리 구제: 직접차별, 간접차별
 - 공공정책의 영향 고려할 의무: 빈곤층·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공공정책이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지
 - 실질적 평등 증진을 위한 조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 2차

인권 현장에서 본 빈곤과 차별

사례, 쟁점 그리고 고민들

2023. 4. 7.

형진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homelessact@gmail.com

1.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 주목의 계기



볼레리비에 드 쉬테 UN국인권특별보고관

2022년 보고서 (A/77/157)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가난한 사람에게 차별은 일상적 경험이 일부이다. 그들은 차별로 인해 고용, 교육, 주택,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약받는다. (...) 즉, 차별은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주된 원인이다.”

- 빈곤과 차별의 악순환적 고리는 어떻게 상호 연결된 채 발생하는가?

- 빈곤층의 반복적인 차별 경험은 사회적 권리를 요구하는 것을 막고 낙인을 부여함으로써 빈곤 상태가 장기 지속되도록 만듦(‘자기실현적 예언’)

- 빈곤/차별의 복잡성을 지우는 소위 ‘능력주의’

- 빈곤을 구조적인 것(착취적인 사회적 관계)의 결과가 아닌, 개인의 노력과 의지 문제로 환원함으로써 빈곤/차별의 복잡성을 제거하고 빈곤-차별 고리를 강화

- 기존 차별금지 논의 지형에서 ‘수직적 불평등(차별)’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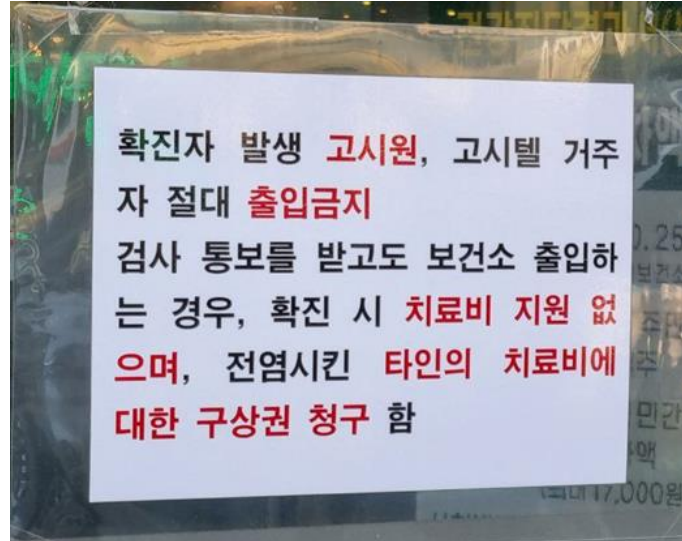
- ‘차별해선 안 된다’는 명시적인 합의의 부재, 그렇다면?

1.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 주목의 계기

1) 빈곤 상태에 놓인 사람을 향한 차별과 배제,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전면화

- 공공장소/공공기관(공적 서비스)을 통해서만 생계유지를 위한 자원을 구할 수 있는 빈민을 향한 적대행위 점증

→ 감염병 시기 집중된 차별과 적대는 홈리스, 노점상을 비롯한 빈민의 생존권을 위협



한 거리홈리스가 올 한해 모아두었던
PCR 검사 의뢰서와 결과지
(지원기관 출입 조건으로 PCR 검사 의무화)

 행정안전부	참 고 자 료	작성과	지역일자리경제과
		담당자	과 장 이 화 진 사무관 김 효 빈
		연락처	044-205-3902 044-205-3908

출소자·노숙인 등은 아동·청소년 관련 희망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각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희망일자리사업 중 학교방역 등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는 출소자·노숙인 등이 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1.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 주목의 계기

2) 빈곤 당사자의 (차별)경험을 상징화할 ‘언어’ 부재

- 겉보기에 중립적인 외양을 갖춘 제도적 차별의 성행
- 차별에 저항하기 위한 명시적인 근거 개념 모호
→ ‘사회적 신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 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 미혼 · 별거 · 이혼 · 사별 · 재혼 ·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차별금지법 발의안

(차별의 개념) ①이 법에서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난한 사람을 향한 차별의 사례와 그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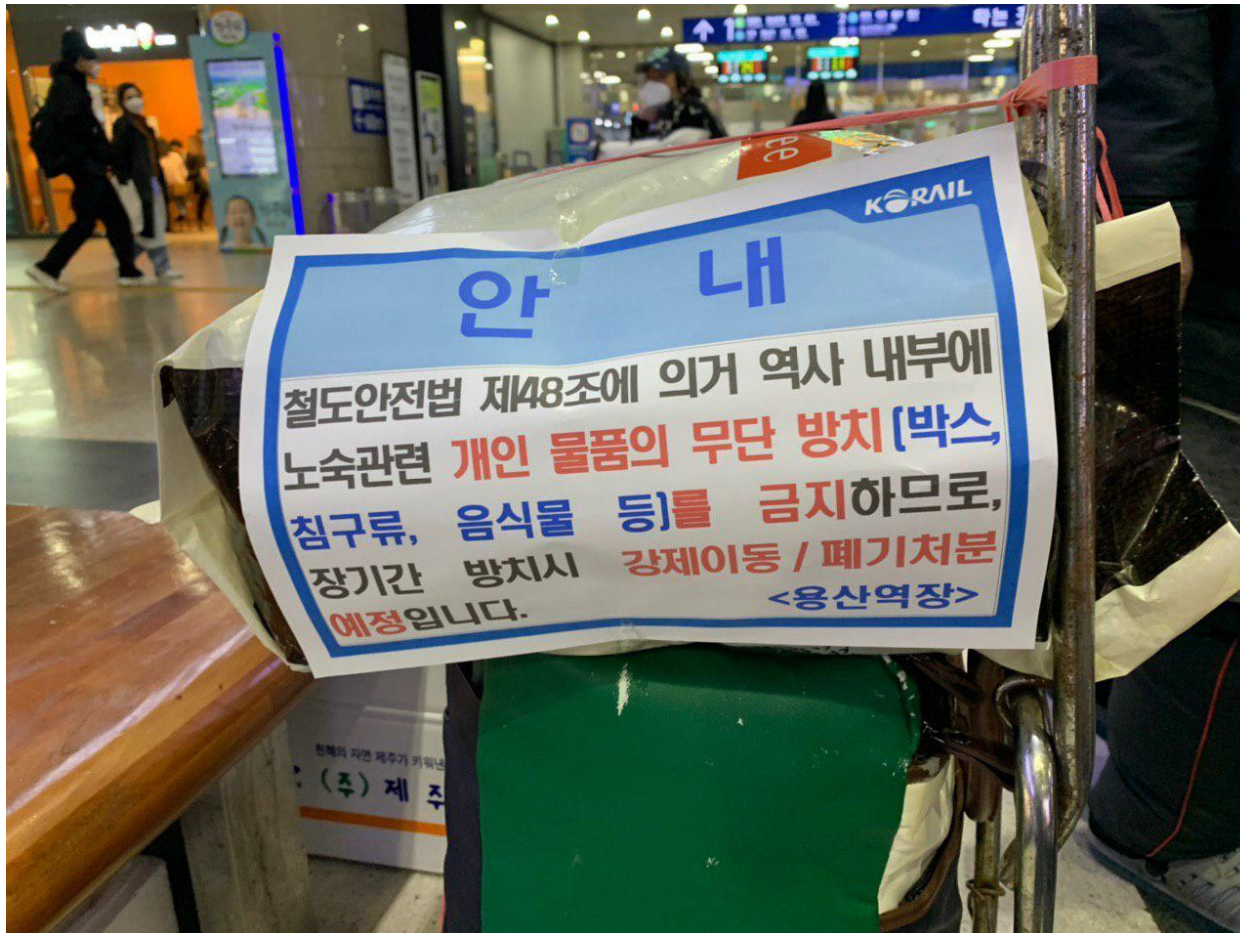
제도적 근간을 가지고 있음

- 광범한 차별 조치와 낙인찍기의 명분으로 작용
- 현상적이고 단편적인 이미지에 기초
 - 빈곤층을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부정직하며, 무엇보다 자기결정(‘자기관리’)에 취약한 사람들로 간주
 - 이런 ‘특성’을 교정하는 것을 정책의 방향으로 설정
 - 공적 지원(공공성)의 불충분함 혹은 사회적 권리 등 구조적 요인을 은폐
- 제도 실행의 결과로써 빈곤층을 향한 기존의 차별적인 시선과 낙인을 강화
 - 민간 주체로 전이
 - 공공부문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구하거나 사회적 권리를 요구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 (조직력을 갖춘) 사회집단에겐 쉽게 용인되지 않음
 - 때때로 외관상 중립적인 형태를 띠기도 하나 제도 실행의 결과는 사회집단에 따라 불균형(빈곤층에 집중)

2. 가난한 사람을 향한 차별의 사례와 그 특징

사례 1 | 공공장소(공공시설물) 접근/이용의 배타적 통제와 '망신주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들의 집에도 있는,
사는데 있어야 하는 것들과
같은 것들이다.”



◀ 용산역 홈리스 당사자의 물품에 붙은 경고문

- <철도안전법> 제48조(금지행위)에 기초
- 공공역사 내 홈리스 혹은 홈리스로 보이는 사람들을 표적 삼아 주기적으로 퇴거조치하거나 물품을 압수/폐기
 - 빈곤과 주거권 침해에서 비롯된 행위를 '무질서'로 치환하여 처벌하는 것. 이는 집이 필요하다는 사실, 물건을 보관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며 공적 서비스와의 연계를 가로막음
 - 동시에 공개적인 망신주기를 통해 홈리스를 법에 반하는 무질서하고 불법적인 존재, 공중도덕과 배려심이 부족한 존재로 간주하게끔 만들
 - '시설' 입소를 강조하는 맥락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물질 조건의 성격 변화와도 맞물려 있음

2. 가난한 사람을 향한 차별의 사례와 그 특징

사례 2 | 공공장소(공공시설물) 접근/이용의 배타적 통제와 '망신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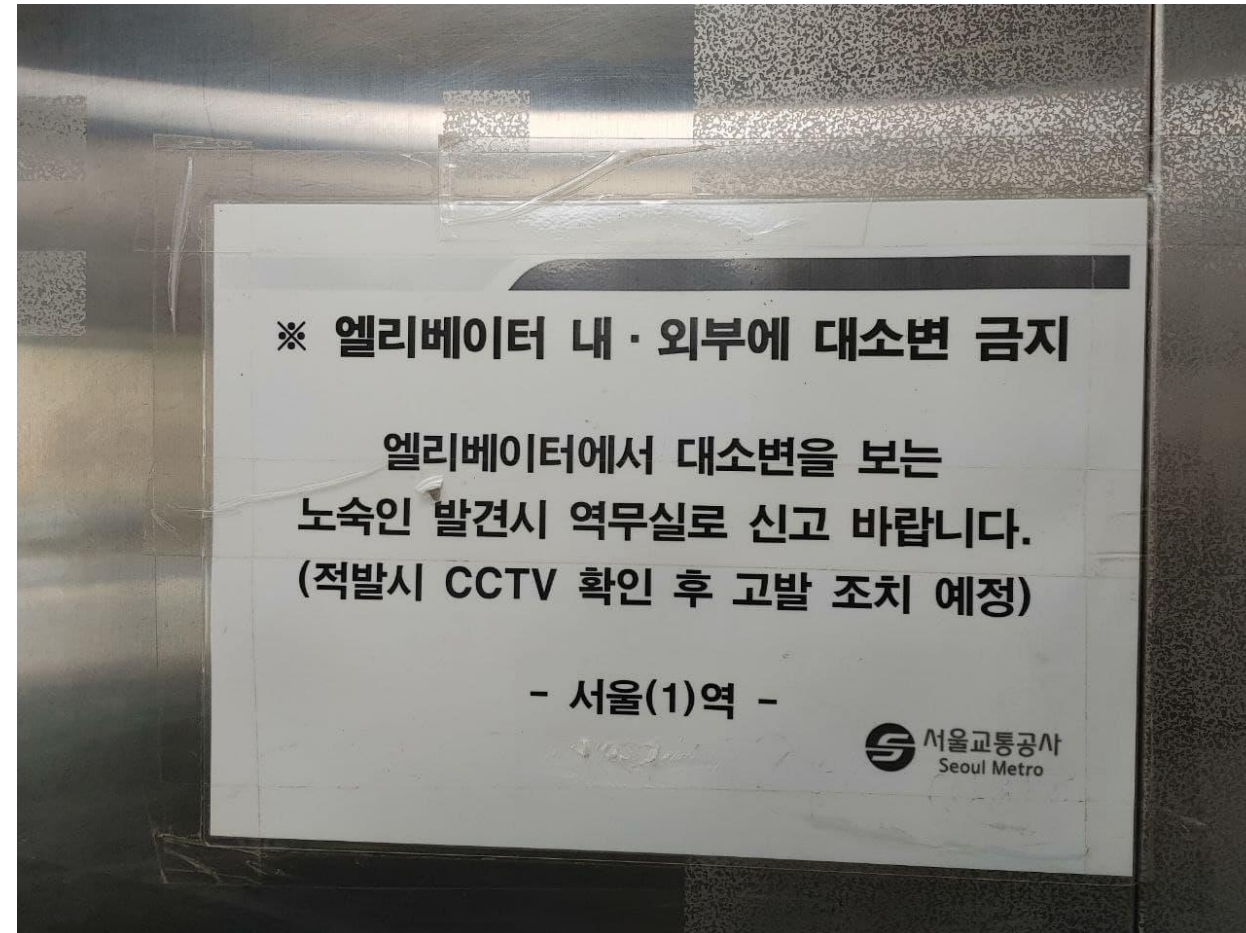
▶ 지하철 서울역 측이 부착한 게시물

- '노숙인'이라는 집단을 특정

- 심야시간 동안 인근에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없음.
아주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던 문제로,
시정부에서 지하철 화장실의 상시 개방을 해결책으로
제안한 적 있으나 공사는 '시설물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거부

- 홈리스를 비롯한 빈곤층은 일상적인 필요를
공공시설물을 통해 해결해야만 함.
즉, 소위 '노상방뇨'는 공중화장실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일

- 이런 구체적인 맥락을 소거하고 '시민'의 범주에서
배제하여 부도덕한 집단으로 규정한 것



2. 가난한 사람을 향한 차별의 구체적 사례와 그 특징

사례 4 | 공적 서비스(복지지원)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치심과 낙인감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비롯한 여러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청할 때 편견과 혐오에 기초한 낙인찍기 발생
 - 수급(권)자가 공적기관 및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것을 꺼리게 만듦
 - 부정수급(‘복지사기’)을 의심하도록 한 제도적 설계(‘자격조건’)에 기초 ex. 부양의무자 기준, 성실의무 강제
- 다른 정책 대상에겐 요구되지 않는 정보와 절차들을 요구
 - 빈곤한 사람은 ‘특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선형적으로 가정한 채 법과 제도가 설계/운영
 - 지원(복지)의 열악함이 아닌 개인의 ‘자립의지’의 문제로 치환

2. 가난한 사람을 향한 차별의 구체적 사례와 그 특징

사례 4 | 공적 서비스(복지지원)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치심과 낙인감

서울시 임시주거지원 입주자 서약서

“입주 전까지 노숙인시설 또는
현 거주지 실내에서 취침하겠습니다.”

“주거지원 동안에는 거리 노숙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거지원 종료 후에도 거리노숙을 하지 않고
주거유지 또는 시설입소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원을 중단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입주신청서’

〈입주자 현황〉 통해 결혼 여부, 병역 등 정보 요구

〈의료현황〉 통해 알코올 의존/장애/질환 정보 요구

〈저축현황〉 통해 수입 대비 저축액 비율 기입 요구

〈노숙인복지법〉 제4조

“노숙인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스스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2. 가난한 사람을 향한 차별의 구체적 사례와 그 특징

사례 5 | 공적 서비스(복지지원)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치심과 낙인감

동행식당 운영 주민 안내문

서울특별시립 돈의동쪽방상담소

동행식당은?

서울시에서 최근 고물가로 식료품비 부담이 가중되는 쪽방주민들에게 **1일 1식**의 식사를 지원하여 우리 주민의 경제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

□ 동행식당 운영 개요

1. 운영기간 : 2022.8.1.~12.31.(5개월)
2. 운영식당 : 7개소 (송해길 및 상담소 인근)
3. 식권배부 : 매월 상담소에서 쿠폰북(식권) 배부 (식권 단가 8,000원)
※ 식권에 날짜가 표시되어 **1일 1매 이상 사용이 불가**하며,
지정 날짜가 지난 식권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4. 이용방법 : 조식, 중식, 석식 자유 이용
 - (1) **지정식당에 식권 제출 및 이용대장 작성**
 - (2) 식사 주문
 - 8,000원 이상 주문시 추가 금액 본인 부담
 - 8,000원 미만 주문시 이용 대장에 미청구액(차액) 기재

쪽방주민 동행식당 이용자 대장

식당명 : 00식당

연번	일 자	구분(조·중·석식)	이용자 성명	비고(미청구액)
식권 번호	2022.8.1	중식	홍길동	
		석식	김선달	1,000원

□ 이용 준수사항(필독) - 식권지급 제한 사항

1. **식권으로 주류 구매시**
2. **식권 양도, 현금 교환, 차액 환불시**
※ 8,000원 미만 식사시 차액 환불 안됨(이용대장 미청구액 기재)
3. 식당 이용시 **주류판매 감소, 소란, 기물파손 등 소란 행위**
※ 경찰 출동 등 법적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

□ 당부 사항

1. 원활한 식당 이용을 위해 **음주 후 이용을 자제**해 주세요.
2. 점심시간(11:30~13:30)이용시 1인 식사가 불가할 수 있으니 **2인 이상 식당을 이용**해 주세요.
3. 식당을 이용하는 **타인을 배려하여 개인 청결**에 신경써 주세요.
4. 착석, 포장 등 식당 이용방법을 참고하여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점심시간 등 식당 이용 손님이 많을 경우 포장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포장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식당 이용시 불편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상담소에 말씀해 주세요
※ **식당에서 다툼을 피하시고 상담소에 말씀부탁드립니다.**

◀ 쪽방주민 대상 '동행식당' 안내문

- 식권지급 제한 사항으로, '소란, 기물파손 등 소란행위', '주류 구매', '현금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 청결 신경', '2인 이상 식당 이용' 등의 당부까지 담김

→ 행정이 복지 이용자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냄

→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지원은 이미 가정된 집단화한 편견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별적

2. 가난한 사람을 향한 차별의 구체적 사례와 그 특징

사례 6 | 공적 서비스(복지지원)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치심과 낙인감

임시주거 지원사업

노숙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고시원, 쪽방 등 임시주거지를 지원하여 노숙을 예방하고 노숙 상황에서 즉시 탈노숙을 지원합니다.

단기간의 주거 지원이기 때문에 취업 및 수급지원 등 지속적으로 주거유지를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함께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 거리 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

지원 내용

- 임대료 지원: 월 25만원 내 / 기본 1~2개월(최장 6개월)
- 생필품 지원: 1회 50,000원 / 본인 선택에 따른 물품 직접 구매
- 기타 지원 : 주민등록 복원, 기초생활 수급신청, 은행업무 지원, 구직활동 지원, 신용회복 상담 등

우선 선정기준

- 사고 위험이 높은 건강취약 거리 노숙인
- 범죄에 노출 우려가 있는 여성 노숙인
- 찜질방, PC방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불안정 노숙인
- 무소득, 월세 연체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위기 대상자

지원불가 대상

- 1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
- 의료지원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전염성 질환, 중증 알코올 중독 등)
- 거동이 불편하여 단독으로 주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상자

◀ 서울시 임시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의 홈페이지 안내문

- “거동 불편자”, “의료지원 필요자”를 주거 지원 불가 대상으로 명시

→ 중독성 질환, 장애 등 복합적인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되도록 제도 작동

→ 거동 불편자, 의료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적합한 주거지원이 부재하다는 사실은 휘발되고 ‘병원’, ‘시설입소’ 등 협소한 선택지만이 제시됨

2. 가난한 사람을 향한 차별의 구체적 사례와 그 특징

사례 7 | 공적 서비스(복지지원)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치심과 낙인감



▲ 보통의 쪽방 종로구 돈의동의 쪽방. 문턱과 계단이 있는 '보통의' 쪽방이다. 임시주거비 25만 원으로 휠체어를 타고 살 만한 방을 구하기는 어렵다.

고 김한수님(2020년 7월 사망)

몇 개월이 지나, 주소불명으로 노령연금마저 끊어지자 진수님은 방을 구해야 했다. 그때부터 진수님과 함께 동자동, 돈의동, 영등포 쪽방촌을 돌아다녔다. 노숙인 임시주거비 25만 원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방은 쪽방이나 고시원뿐이다. 고시원은 계단이 있고 복도가 너무 좁다. 쪽방도 마찬가지로 언덕 위, 아니면 좁은 골목에 있다. 휠체어를 둘 곳이 없다. 화장실은 대부분 '푸세식'인데, 심지어 화장실이 없는 건물도 있다. 겨우 문턱이 없는 쪽방을 찾으면 방 관리인이 장애인은 받지 않겠다 한다. 매번 허탕만 쳤다.

관리인에게 겨우 사정해 혼자서는 갈 수도 없는 1층 쪽방을 잡았다. 쪽방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조금만 버티면 된다. 희망은 잠깐. SH공사에 확인하니,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거취약계층용 매입임대주택은 없단다. 선정이 돼도 4평짜리 방 안에 1년 내내 갇힐 판이다. 65세가 넘으면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도 신청할 수 없다. 하루 3시간 요양보호서비스로 어디를 다닌단 말인가.

- 오마이뉴스 2019. 12. 4. 강민수 기고

2. 가난한 사람을 향한 차별의 구체적 사례와 그 특징

사례 8 |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일방적인 불리함



“오늘날 주거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의 삶에 우리네 시스템이 개입해 들어가는 방식은 과할 정도로 이중적이다. 행정상 등록 가능한 주소지를 갖지 못하면 기초생활수급조차 쉬이 신청할 수 없는 현실이 말해주듯, 보편적 사회보장체계 속에서 ‘주거가 없는 상황’은 과소 개입(배제)의 근거로 작용한다.

반면, 형사법체계 속에서 같은 상황은 과잉 개입의 동인으로만 작용한다. 경미한 범죄혐의에도 구속과 체포가 가능해지고, 혐의자에겐 일말의 절차상 편익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홍리뉴스 72호 2019. 11.)

- 〈형사소송법〉, 구속의 3대 사유 가운데 하나로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명시. 보석도 불가
- 〈경범죄처벌법〉, 주거(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 이에 더해 ‘구걸행위’ 처벌
- 거주지나 핸드폰이 없어 법적 통지 받지 못한 사람이 이후 주소지가 생겨 해당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여러 구제 절차(정식재판 청구, 분납 신청)를 이용하기 어려움. 벌금형일 경우, 납부할 경제력이 없어 ‘노역장 환형유치’ 되는 경우가 대다수.

3. 빈곤과 차별(금지), 쟁점과 고민

2022년 12월

‘빈곤과 차별’ 집담회에서 나온 논의들

- 자신의 경험을 말하기 위한 명징한 언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차별(금지)의 개념은 중요.
→ 차별과 평등을 둘러싼 논의 지형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을 것
- 경제적 상태에 따른 차별은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정체성 혹은 인구학적 특성에 기초한)의 차별에 비해 덜 규범적이며 논의의 역사가 짧음
- 그러나 빈곤에 이르는 과정, 이를 떼면 ‘착취적인 사회적 관계’를 빈곤-차별이라는 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빈곤과 차별의 복합성과 다면성을 각각 고려해가며 구체적인 요구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의 논리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후원하기 ♥

정기후원 CMS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재)인권재단사람이 운영하는 인권단체 재정안정기금의 지원을 받는 재정발전소 회원단체입니다. 다음 양식을 통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지정하여 <인권단체 재정안정기금>에 기부하시면 회원님의 CMS 출금계좌와 기부금영수증에는 '인권재단사람'이 표기되며, 기부금은 <재정발전소> 사업을 통해 단체에 배분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지지하고, 제중 운동에 힘을 실어주시고자 한다면 정기후원 CMS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후원이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안정적으로 활동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

일시후원 : 지정기탁 / 계좌이체

정기후원 CMS 외에도 지정기탁 및 계좌이체를 통해 일시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지정기탁 (※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지정하여 일시기부를 원하실 경우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시면, 기부금영수증에는 '인권재단사람'이 표기되며 기부금은 <재정발전소> 사업을 통해 단체에 배분됩니다.

지정기탁 방식으로 일시후원 하려는 경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메일로 먼저 문의해주시면 후원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 이메일 : equalact2017@gmail.com

2) 계좌이체 (※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직접 보내시는 경우, 아래 계좌로 후원금을 보내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